

IMO 제36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소위원회 회의 참석 보고

수 산 청 어 선 과
계 장 손 영 대

1. 회의 개요

- 기간: 1992. 2. 3(월)~1992. 2. 7(금) (5일간)
- 장소: 국제해사기구 (IMO) 본부 (영국 런던)
- 참가현황
 - 회원 국: 34개국, 140명
 - 준회원국: 1개국, 5명
 - 옵서버, UN산하대표기구 등: 25명
 - * 한국대표단
 - 주영한국대사관 해무관 : 최 낙 정
 - 해운항만청 주재 대표 : 송 성 호
 - 수산청어선과 조선기좌 : 손 영 대
 - 한국선급 런던사무소장 : 김 중 원
 - 한국선급 국제협력과장 : 임 종 식
 -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 신 현 복

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편의상 협약 해당 규칙을 인용함

- 선수높이의 계산방법에 관한 지침(협약 첨부서류 3의5)
 - 제34차 SLF 회의시 네델란드제안 및 제 35차 SLF 회의시 아국의 수정요구에 의거 금번 회의시 검토하게 됨.
 - 아국대표는 토레모리노스협약에 규정된 선수높이를 아시아지역의 해상상태에 비해 약조건인 유럽지역의 기후 및 해상상태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모든 협약적용어선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아래의 아국어선의 선수높이에 대한 비교수치를 제시하면서 협약규정을 완화할 것을 재차 촉구함.

2. 주요토의내용 및 결과(어선관련분야)

'77토레모리노스협약 의정서 개발

- 의정서의 부속서는 SOLAS협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각장별로 별도 규칙으로

표 본 어 선	길 이 (m)	토레모리노스협약(m)	LL협약 (m)	*실제선수 높이(m)
A	49.60	4.364	2.502	2.900
B	46.90	4.200	2.380	2.800
C	49.83	4.378	2.512	3.100
D	57.51	4.790	2.850	2.900

- 이와 관련 일본대표는 협약 첨부서류 3의5, 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 (3) Where a bulwark is fitted, its actual height may be taken into account, provided that the bulwark extends from the stem to a point at least 0.15L abaft forward perpendicular.
- (4) The vertical distance from the deepest waterline in service conditions to the deepest designed waterline both measured at the forward perpendicular, may be allowed in the calculation of the bow height

상기 제안에 대해 유럽국가 대표들이 블워크 높이를 너무 높이는 것은 갑판 상에 물의 유입시 안전에 위해가 되므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상한선 여부에 대하여는 차기 중간회의 시(6월 첫주, 아이슬란드) 검토키로 하였으며 아국대표는 상기 일본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상기 (4)항 중 service conditions를 operating conditions in regulation 33(a) to (d)로 수정하게 함.

- 또한 협약 제33규칙 (1) (b)항(만재어장발 상태)에 있어서는 연료, 소모품 등의 적재상태를 50% 만재상태로 하기로 하였음

- 협약 제1장 제2규칙 제5항 및 제8(a)항; 길이 및 깊이의 정의
최소형깊이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길이를 측정할 수 없어 1966 ICLL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깊이의 정의를 수정함
- 협약 제2장 제23규칙 제3항; 현창
영국대표가 제3항의 끝에 다음 문구를 추가토록 제안한데 대해 차기 중간회의 시 추가여부를 결정키로 함

“Where sidescuttles are fitted at 500mm or above but less than 1000mm above the deepest operating waterline and contiguous with the boundary of the hull, such sidescuttles shall be of the fixed type, fitted in recess spigots and suitably protected against damage by fishing gear.”

- 협약 제2장 제25규칙; 배수구
제35차 SLF 회의시 스페인이 제안한 “shelter deck type and with side openings”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 배수구 면적을 감소시키자는 데 대하여 여러 대표들은 “shelter deck의 working openings”을 통해 물이 들어왔을 때의 위험을 고려할 때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 협약 제3장 제33규칙; 비손상 복원성
계산을 위한 적하상태
본 규칙 (1) (d)항의 20% Full Catch를 40% Full Catch로 수정하자는 일본제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차후 중간회의시 토의키로 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상세한 계산결과를 제출키로 함
- 협약 제5장 제74규칙 (1) (f) 및 제94규칙 (1) (f); 무선실
GMDSS의 도입으로 별도의 무선실이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항 삭제키로 함
- 협약 제5장 PART B의 서두 “Fire Safety Measures in Vessels of less than 55 meters in length”를 “Fire Safety Measures in Vessels of 45 meters in length and above but less than 60 meters in length”로 수정 (제23차 SLF회의시의 결정사항임)
- 협약 제5장 제101규칙; 기관구역의 소화장치
할론사용을 금지한 제17차 총회 결의 (A. 719(17))에 따라 (1) (a) (iii)항에 규정된 BCF 또는 BTM을 삭제키로 함
- 협약 제5장 제89규칙; 방화구조
(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키로 함

“(13)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 of this regulation, the Administration may accept “A-0” class divisions in lieu of “B-15” or “F” class divisions, having regard to the amount of combustible materials used in adjacent spaces.”

- 협약 제7장; 구명설비
 - 전문(제110규칙~제124규칙) 개정 (개정내용은 추후 게재할 예정임)
- 협약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 전문(제125규칙~제127규칙) 개정 (개정내용은 추후 게재할 예정임)
 - 개정안 제1규칙(10)항은 여객선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키로 함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중간회의시 계속 토의키로 함
 - 본장의 적용길이를 24m에서 45m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 제2규칙 (4) (a) (훈련교범비치규정) 항 적용어선을 길이 24m에서 45m 또는 60m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 훈련교범의 개발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협약 제9장; 무선전신과 무선전화
 - 전문(제128규칙~제146규칙) 개정 (개정내용은 추후 게재할 예정임); 본장의 제목을 “무선통신”으로 변경
 - 일본대표는 A3 및 A4 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최소한 2가지 정비방법을 사용토록 되어있는 제14규칙(무선장비의 정비규정) (7)항 적용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7)항에 다음 문장을 추가토록 제안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중간회의시 재검토키로 함

“The administration may, however, allowing using one maintenance method, taking account of the type of vessel and its mode of operation.”

- 협약 제10장; 항해장비
 - 본장 개정과 관련, 제36차 항해안전소위원회가 준비한 다음의 세가지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시 계속 검토키로 함
 - 첫번째안; 본장을 삭제하고 SOLAS 제5장 제12규칙 적용
 - 두번째안; 본장을 SOLAS 제5장 제12규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정
 - 세번째안; 본장을 SOLAS 제5장 제12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비손상복원성 코드

작업반은 본 코드에 대하여 회원국의 제안 및 개선되어야 할 규정을 합병하여 총회결의로 개발할 것을 수락하고 금번 회의시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했음

- Loading Computer 사용을 권장하는 문구 삽입(SLF 36/3/1, SLF 36/3/9)
- 차후 코드 개정시 Stability Booklet의 견본을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토록 함(SLF 36/3/3)
- 복원성자료는 공식언어 또는 해당정부의 언어 및 선장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함(SLF 36/3/7) (영어나 불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 언어의 번역문 포함)
- 어선의 착빙에 관한 운용사항은 새로운 부속서2로 옮기고 나머지 착빙에 대한 고려조항은 새로운 제5장으로 옮기기로 함(SLF 36/3/8)
- 코드의 각 괄호로 된 부분은 삭제키로 결정
- 작업반은 본 코드가 기존의 IMO 문서로부터 개발되어졌음을 주목하고 추가기준 특히 인양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견인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범선, Catamarans,

24m미만의 어선에 대한 추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해상에서의 전복 및 양하·적하시의 전복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에 대해 추후 더 고려토록 함. 또한 본 코드가 현재의 형식으로 마무리된 후 다른 추가 기준을 차후 개발시 고려할 것을 수락함

- 본 코드와 본 코드의 근거인 IMO문서 사이의 관계를 토의하고 MODU코드 및 DSC코드와 같은 그러한 다른 코드들의 관련 요구사항 및 관련부분을 본 코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본 코드와 원래코드(MODU 및 DSC코드) 중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코드가 우선한다고 생각함

어로장비에 의한 외력에 관한 운항상의 문제

- 소위원회는 어로장비에 의한 외력의 위험가능성에 대하여 비손상복원성코드 4.2.2.8항에 언급되었으므로 본 항목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결정하고 본 사항은 소위원회의 작업계획에서 삭제토록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함
- 영국대표는 잠수함에 의하여 어로장비가 감기는 위험에 대하여는 상기 4.2.2.8항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과도한 외력 및 모멘트로부터 선박의 위험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지 않아 동항에 주의문구를 달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네델란드 대표는 이러한 외력 및 모멘트를 방지하는 규칙에 대하여 타 선박까지 포함하여 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차후 그러한 요건을 개발할 것을 제의함
- 소위원회는 영국 및 네델란드의 견해에 동의하고 상기 문제점들을 차후 비손상복원성코드에 반영되도록 작업반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 코드의 최종작업시 고려토록 지시함

소형어선의 선원을 위한 안전 및 훈련수칙 개발

- 1) 소위원회는 본 의제를 '77어선안전협약 의정서의 적용을 받지않는 어선에 대하여 추후 의정서의 추가 규정으로 할 것이었음을 상기함
개정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은 FAO/ILO/IMO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Design,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mall Fishing Vessels" 와 "Code of Safety Fishermen and Small Fishing Vessels"의 Part A,B 및 "Document for Guidance on Fishmen's Training and Certification" 임
- 2) 소위원회는 LSR 소위원회가 상기코드의 Part B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주목했으며 (SLF 36/2/1, Para. 23 및 24)상기에 언급한 문서들의 검토는 '77어선안전협약 의정서의 부속서 여러 chapters의 적용을 위한 길이 제한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작업의 완료예정기일을 1994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락하고 이 제안에 동의해 줄 것을 MSC위원회에 요청함
- 3) 문제가 되는 크기의 어선들에 대하여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정부의 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을 덴마크 대표가 제안한데 대하여 소위원회는 본 사항을 관련작업에 넣기로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
- 4) EEC옵저버는 MSC 제60차 회의시 소형어선을 위한 규칙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소위원회에 요청함
- 5) 소위원회는 본 의제중 "small"이란 말이 더이상 필요없으므로 "Further development of safeth guidelines and safaty training guidelines for fishing vessel not covered by the SFV protocol"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Reykjavik 회의시 이 문제에 대해 반대

- 할 것이라는 데 대해 주목함
- 6) 기존 기준들에 대한 검토시 FAO 및 ILO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상기 1항에 언급한 문제들의 개정작업시 이들 기구가 참여토록 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 문서들이 하나의 독립된 서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견해에 대해 위원회가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함
- 7) 제5항의 결정에 따라 다음사항들이 관련 소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관련 소위원회들의 차기회의시 이들을 의제항목에 포함토록 지시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함

소위원회	Voluntary Guidelines	Code of safety for Fishermen and Small Fishing Vessels
COM	Chapter 8	Part A. Appendix II Part B. Chapter IX and annex VIII
DE	Chapters 1, 2, 4 and 10	Part A. Chapter 3 Part B. Chapters I, II and V and annexes II & V
FP	Chapter 5	Part A. Chapter 9 Part B. Chapter VI
LSR	Chapter 7	Part A. Chapter 8 and appendix VI Part B. Chapter VIII & annex VIII
NAV	Chapter 9	Part A. Chapter 2 Part B. Chapter X
STW	-	Part A. Chapter II Part B. annex IX

TM 69협약의 해석

- Stepped upper deck :
현행 협약에는 상갑판 계단부에 대한 수치정의가 없어 균일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키로 하고 차기회의시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

a discontinuity in the upper deck which extends over the full breadth of the ship and is in excess of 1m in length shall be treated as a step as defined in regulation 2(1) steps, situated outside the length (article 2(8)) are not to be considered.

- 기존선에 대한 TM 69협약의 발효 소위원회는 1994. 7. 18 기존선에 대한 TM 69협약적용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재측정 및 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해당 정부가 선주에게 독촉토록 요청(MSC 59/32/1, MSC/Circ. 575 dated 8 July 1991)한 MSC의 조치를 주목하고 제안정부에게 1994. 7. 18까지 협약 발효를 위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함
- 소위원회는 TM협약 제12조에 따른 1969 국제톤수증서의 확인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 결과 톤수는 각종 협약들의 적용 및 제세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확인이 필요함을 고려하고 만약 톤수가 잘못되어 있다면 부정상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톤수측정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적절한 확인 수행방법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3. 1993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 장: Mr. H. Hormann(Germany)
- 부의장: Professor L. Kobylinsky(Poland)

4. 아국대표단 활동사항

금번 소위원회 회의는 본회의, 3개의 working group 및 3개의 drafting group으로 나뉘어 개최됨에 따라 아국 대표단은 본회의,

비손상복원성 작업반 및 '77토레모리노스 국제협약 의정서개발 작업에 참석하고 전기한 바와같이 아국훈령 및 각나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아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아울러 아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지를 표명하는등 아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

5. 종합의견

가. 현안문제인 '77토레모리노스 협약의 정서' 개발은 금번회의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6월초 아이슬란드 Reykjavik에서 개최되는 중간회의에서 나머지 미해결 부분을 포함하여 의정서 초안에 대한 최종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93년봄 의정서 비준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94년 봄부터 '77토레모리노스 어선안전협약'이 발효될 전망이다. 전기한 미결항목에 대한 자료분석('93. 4. 10까지 제

출기로 되어있는 아국어선들의 선수높이에 대한 자료 포함) 및 아국의 최종적인 입장을 재정리하여 중간회의시 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공동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현재 SLF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제가 19개 항목에 이르고 있고 일본, 영국 등 선진해운국에서는 각 의제에 대한 자료검토,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자국의 해운·조선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 또는 재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아국은 동 국제협약의 개정 또는 제정 추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바 앞으로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조체제구축 및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확보 등으로 타 IMO관련 회의의 참여확대는 물론 아국에 유리하게 각종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됨.

자 연 사 랑

나 라 사 랑